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0가단1019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지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김주현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C을 대위하여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부분(아래의 청구취지 중 순번 2번)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 체결된 대물반환예약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14. 접수 제1245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9. 체결된 대물반환예약¹⁾ 계약과 2018. 12.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859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선택적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14. 접수 제1245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859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2022. 7.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468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6. 20. ‘C은 원고에게 93,135,290원과 이에 대한 2015. 6. 1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6316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2019. 4. 12. ‘원고와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다(위 제1심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24.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서 46,679,215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채권액은 83,467,783원과 이에 대한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다. 피고는 2018. 8. 13. C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4.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124547호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8. 1. 19. C와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19.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993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8. 12. 30. C와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피고는 2019. 1. 3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선택적 주장

가. 원고의 채무자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 인하여 C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무효이고,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다. 피고는 C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C의 집행 가능한 모든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C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통하여 원고의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음이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채권자대위청구를 하면서 C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3) 판단

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참조),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나) 소송요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는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개별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밝혀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도착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는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개별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밝혀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도착한 증거만으로는 C이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취소의 대상과 범위 역시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도착한 증거만으로는 C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도착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C과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

별지 1

목 록

1.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제1층 [] 호 중 []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92.9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54.3364

2.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제2층 [] 호 중 []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8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에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6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7563

3.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2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에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월곶로19길100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8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에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1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4640

4.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2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특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1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4640

5.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2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6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7563

6.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3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월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6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7563

7.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3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사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1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4640

8.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3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사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1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4640

9.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3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월근콘크리트구조 평스타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6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7563

10.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4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월근콘크리트구조 평스타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에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6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7563

11.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4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에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월근콘크리트구조 평스타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에 표시
 건물번호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4640

12.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4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타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표시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1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4640

13.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4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타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건물번호

건물내역 28.6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7563

14.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5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건물번호

건물내역 28.6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7563

15.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5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1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8.4640

16.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5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1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4640

17.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5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타이프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6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7563

18.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타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6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7563

19. [조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타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1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4640

20.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1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4640

21.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28.6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16.7563

22.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 7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월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44.53㎡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26.0257

23.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7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43.7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25.5815

24.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7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37.6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22.0046

25.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7층 호 중

의 공유지분 1/2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상라브지붕 7층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10.16㎡

2층 내지 6층 132.99㎡

7층 183.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48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38.4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6분의 22.4488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별지 2

목 록

1.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 3필지 [] 제4층 []호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 []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0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지하1층 2224.98㎡

지하2층 2337.90㎡

지하3층 2337.85㎡

지하4층 1890.32㎡

1층 1634.16㎡

2층 1770.52㎡

3층 1754.02㎡

4층 내지 8층 1061.27㎡

9층 내지 10층 663.3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 1.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대1160.1㎡ |
| 2.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대593.3㎡ |
| 3.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대1204.1㎡ |
| 4.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대90.2㎡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 25.6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2, 3, 4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3407.7분의 7.38

2.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 3필지 [] 제7층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0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지하1층 2224.98㎡

지하2층 2337.90㎡

지하3층 2337.85㎡

지하4층 1890.32㎡

1층 1634.16㎡

2층 1770.52㎡

3층 1754.02㎡

4층 내지 8층 1061.27㎡

9층 내지 10층 663.32㎡

대지권의 목적업 표시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1160.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593.3㎡3.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1204.1㎡4.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90.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40.7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2, 3, 4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3407.7분의 11.75

3. [조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 3필지 제9층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0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지하1층	2224.98㎡
지하2층	2337.90㎡
지하3층	2337.85㎡
지하4층	1890.32㎡
1층	1634.16㎡
2층	1770.52㎡
3층	1754.02㎡
4층 내지 8층	1061.27㎡
9층 내지 10층	663.3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1160.1㎡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593.3㎡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1204.1㎡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90.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17.2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2, 3, 4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3407.7분의 4.99

4.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 3필지 제9층 호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0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지하1층	2224.98㎡
지하2층	2337.90㎡
지하3층	2337.85㎡
지하4층	1890.32㎡
1층	1634.16㎡
2층	1770.52㎡

3층 1754.02㎡
4층 내지 8층 1061.27㎡
9층 내지 10층 663.3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1160.1㎡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593.3㎡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1204.1㎡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90.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22.7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2, 3, 4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3407.7분의 6.55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1) 아래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매매예약임